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85
----------	-------

발의연월일 : 2019. 7. 22.

발의자 : 전해철 · 변재일 · 정세균

이학영 · 김민기 · 백혜련

유동수 · 고용진 · 임종성

신창현 · 김영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당국인 국세청장, 관세당국인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

이에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관세법」 제270조”를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4.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다.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수사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	제7조(수사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① -----.

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u>검찰총장</u> , <u>국세청장</u> , <u>관세청장</u>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u>금융위원회</u> 또는 <u>국가정보원장</u> 에 제공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u>검찰총장</u> , <u>경찰청장</u> , <u>해양경찰청장</u> , <u>국세청장</u> , <u>관세청장</u>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u>금융위원회</u> , <u>국가정보원장</u> (이하 “검찰총장 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	

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 ⑩ (생 략)	----
⑪ <u>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u>	⑫ (생 략) ⑪ <u>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u> ⑫ (현행과 같음)
⑫ (생 략)	----